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	----

제출일자 : 1999. 11. 2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사천시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수도과와 하수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하수도사용료를 수도과에 위탁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을 하수과와 수도과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13조제4항)

3. 법적근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80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p> <p>①(생략)</p> <p>②(생략)</p> <p>③(생략)</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천시 수도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하수과와 수도과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p> <p>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p> <p><신설></p>	<p>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⑤(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